

운행제한차량 과적예방 협조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교훈 삼아 시민의 안전과 한강교량 등 도로의 구조보전 및 안전을 위해 도로법 제77조에 의거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업자께서는 건설기계 및 장비 등 화물 운송시 관계 규정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의 경우 과적차량 운행 규정(첨부)을 위반하여 운행한 결과,

- ❖ 도로시설물 훼손으로 인한 도로보수 유지비 및 단속인력·장비 투입 등에 따른 많은 예산을 낭비시키고 있으며,
- ❖ 중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를 유발시켜 시민의 생명과 재산상의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하중 11톤 차량이 한대 지나가면 승용차 11만대가 미치는 것과 같고 교통 사고 치사율은 승용차 사고의 4배에 이를 만큼 시민의 피해가 가중됩니다.

이에 따라 2010.9.23.부터 개정된 도로법 시행으로 **과적행위를 한 차량 운전자, 임차인으로서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지 않는 자,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도록 지시·요구 및 감독 등의 권한을 갖는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과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장에 대하여는 과적여부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시설물 보호 및 유지관리와 통행의 안전 확보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

